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KAIST 구성원의 참여 확대 등 총장 선임절차 개선〉
■ 김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182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문위원 강 대 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1
III . 주요내용	2
IV . 검토의견	3
1. KAIST 구성원의 참여 확대 등 총장 선임절차 개선(안 제7조 등)	3
※ 참고자료	
1. KAIST 및 주요 국립대학 총장 선임 절차	1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김현의원 등 11인

나. 발 의 일 : 2026. 3. 3.

다. 회 부 일 : 2026. 3. 4.

II. 제안이유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라 한다)의 총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는 과거 해외 우수 석학 유치 및 명망 있는 과학기술인의 전략적 영입을 위해 도입된 방식이나,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적 가치를 중시하는 현대 고등교육의 흐름과는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일반 국·공립대학교의 경우, 「교육공무원법」 등에 의거하여 대학 구성원의 합의에 따라 직접선거제 또는 간접선거제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총장을 선출하고 있음. 이에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 고등교육기관인 KAIST도 이사회 중심의 총장 선출 구조에서 벗어나,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와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교수·학생·직원 등 실질적인 대학 구성원의 의사가 총장 선출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KAIST 총장 선출 방식을 「교육공무원법」 등 여타 국·공립대학교 수준으로 유연화하여,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고,

구성원 스스로의 심도 있는 검증을 통해 총장 선임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직접선거제와 간접선거제를 모두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Ⅲ. 주요내용

가. KAIST 총장의 선임 주체를 당초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7조제3항).

나. 총장선임추천위원회에서 직접선거 또는 간접선거 방식으로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사무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직접선거의 경우, 선거의 공정성 확보 및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총장 선거운동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의3 신설).

IV. 검토의견

1. KAIST 구성원의 참여 확대 등 총장 선임절차 개선(안 제7조 등)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①한국과학기술원(이하 “KAIST”) 총장 선임방식을 현행법의 이사회 선임 구조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②총장 후보자 선정 방식을 추천위원회에서 선정하거나,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③교직원·학생 등의 합의로 직접선거 시 선관위 위탁 및 선거운동 제한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총장) ①·② (생략)	제7조(총장)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 총장선임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정하되----- -----.
④ ~ ⑥ (생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신설>	제7조의2(총장의 선정절차 및 선거사무의 위탁) ① 총장 후보자의 추천 및 선임을 위하여 과학기술원에 총장선임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과학기술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

현행	개정안
	<u>는 하나의 방법에 따라 총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u> <u>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u> <u>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u> <u>③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u> <u>④ 총장을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과학기술원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u> <u>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할 때의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선거운동, 선거비용, 투표, 개표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려는 경우에</u>

현행	개정안
<신설>	는 미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과학기술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라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가 총장 후보자 추천 선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 이 법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 등에 관하여는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73조를 적용한다. ⑦ 총장 후보자 선정을 위한 선거 관리에 드는 비용은 과학기술원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3(총장 선거운동의 제한) ① 총장을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총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선거인(선거인 명부 작성 전에는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에게 총장 후보자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 또는 공

현행	개정안
	<u>사(公私)의 직위를 제공하거나 제공할 의사표시를 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하는 행위</u> 2. <u>총장 후보자 선거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게 후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후보자에게 사퇴를 하게 할 목적으로 하는 제1호에 규정된 행위</u> 3. <u>제1호 또는 제2호에 규정된 이익이나 직위를 제공받거나 그 제공 의사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u> ② <u>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인을 호별(戶別) 방문하거나 방문하게 하는 행위 또는 선거인을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모이게 하도록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u> ③ <u>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공연하게 구체적인 사실을 드러내서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u> ④ <u>누구든지 총장 후보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외의 행위를 할 수 없다.</u>

현행	개정안
	1. <u>선전벽보의 부착</u> 2. <u>선거공보의 배부</u> 3. <u>소형 인쇄물의 배부</u> 4. <u>합동연설회 또는 공개토론회의 개최</u> 5. <u>전화·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u>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6조¹⁾는 KAIST에 총장을 포함한 이사를 두도록 하고, 이사(총장 포함)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이 경우 승인 전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7조제3항²⁾에서는 KAIST 총장에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별도로 다시 규정하고 있으며,

정관에서는 총장후보발굴위원회(Search Committee)의 추천과

1) 「한국과학기술원법」 제6조(임원) ① 과학기술원에 이사장 및 총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의 감사를 두며, 그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이사 및 감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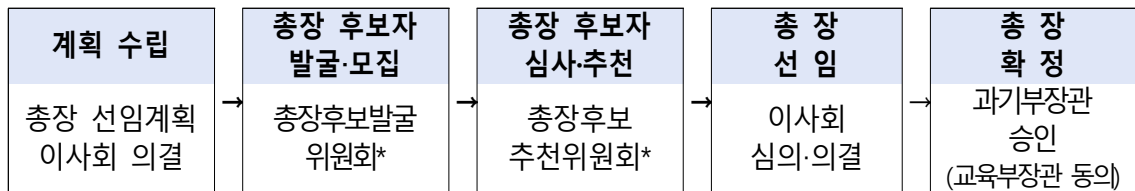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을 승인하려면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한국과학기술원법」 제7조(총장) ③ 총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임하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개모집방식을 병행하여 총장후보자를 모집하고 해당 후보자에 대해 이사·교수·외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총장후보선임위원회의 추천(3인 이내)을 거쳐 이사회에서 선임하도록 세부 절차를 규정³⁾하고 있음.

- 한편, 나머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련 3개의 과학기술원⁴⁾도 KAIST와 유사한 구조의 총장 선임절차를 두고 있음.

<4대 과기원 총장 선임 절차>



* 과기원별로 위원회명은 대동 소이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이와 같이 현행 KAIST 총장 선임 방식은 일부 교수 및 외부인사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가 최종적인 선임

3) 「한국과학기술원 정관」 제17조(총장) ⑤ 총장은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모집방법을 거쳐 제17조의3에 의한 총장후보선임위원회의 추천에 의거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의2(총장후보자 등 모집방법) ① 총장후보자의 모집방법은 총장후보발굴위원회(이하 "Search Committee"라 한다)의 추천방식과 공개모집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Search Committee는 총장후보자를 발굴하여 제17조의3에 따라 구성되는 총장후보선임위원회에 추천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17조의3 (총장후보선임위원회) ① 총장 후보자를 이사회에 추천하기 위하여 총장후보선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이사회에서 선출한 이사 2인
2. 과학기술원에서 선출한 교수 1인
3. 이사장이 지명하는 외부인사 1인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당연직이사 1인

③ 총장후보선임위원회는 Search Committee에서 추천한 자와 공개모집에 응모한 자에 대한 심의를 거쳐 총장후보자 3인 이내를 이사회에 추천한다

4)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권한을 갖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어 직원, 학생 등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있었음.

- 특히 KAIST의 총장 임기 종료('25.2.) 후 후임 총장 선임이 장기간 지연된 점은 우리 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⁵⁾, 최근 이사회 부결(2026.2.)로 후임 총장 선임이 더욱 지연되었는바,

- KAIST 내부에서도 교수협의회⁶⁾ 및 총학생회⁷⁾ 등에서 대학 운영의 불확실성 등을 우려하며, 총장 선임제도 개선을 통한 구성원 참여와 투명성 강화를 요구하는 등 현행 총장 선임구조에 한계가 나타남.

○ 이에, 개정안은 「교육공무원법」상 국립대학교와 같이 총장 선임에 직접선거제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원, 직원, 학생 등 KAIST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고 총장 선임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음.

5) 2025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2025년10월24일)

6) KAIST 교수 협의회, "총장 선임 부결, 깊은 유감"(조선일보, 2026.3.6.)

<https://www.chosun.com/economy/science/2026/03/05/ENEZSZNN2NECTNBFOORKPGITDI/>

7) "과학기술은 공백의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총장 선임안 부결에 대한 KAIST 양대 총학생회 성명문(2026.3.5.) 참고

- 현행 「교육공무원법」에 따르면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추천위원회를 두고, 후보자는 추천위원회 선정 또는 교원·직원·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바⁸⁾, 개정안은 동 입법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임.

○ 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첫째, 동 개정안은 그간 KAIST 총장 선임방식의 거버넌스를 전반적으로 재설계하여 직접선거 등 새로운 선임방식의 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으로, KAIST 내부 구성원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8) 「교육공무원법」 제24조(대학의 장의 임용) ①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하되, 공립대학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제24조의3 및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에서 같다)의 장은 해당 대학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다만, 새로 설립되는 대학의 장을 임용하거나 대학의 장의 명칭 변경으로 인하여 학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총장으로, 총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을 해당 대학의 학장으로 그 임기 중에 임용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대학의 장의 임용추천을 위하여 대학에 대학의 장 임용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 추천위원회는 해당 대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라 대학의 장 후보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추천위원회에서의 선정

2.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른 선정

④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은 여성으로 한다.

⑤ ~ ⑦ (생략)

제24조의2(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대학의 장 후보자로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하 생략)

제24조의3(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선거사무의 위탁) ① 대학의 장 후보자를 추천할 때 제24조제3항제2호에 따라 해당 대학 교원, 직원 및 학생의 합의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직접선거로 선정하는 경우 해당 대학은 선거관리에 관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선거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 총장 선임방식은 단순한 절차변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학 운영의 자율성·민주성, 후보자 검증, 이사회와의 권한관계 등 거버넌스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임.
 - 특히 교수단, 교직원, 학생회 등 구성원별로 고려사항이 다를 수 있고, KAIST가 단순 대학조직이 아니라 국가 연구기관의 성격도 함께 지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 의견과 국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하여 특정 방식을 제도화하기에 앞서 제도의 수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KAIST는 현재 총장 장기간 미선임 문제 및 총장 선임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교직원·학생 등 내부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라는 입장이므로, 총장 선임 거버넌스 개편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의견수렴 결과를 기다린 후 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개정안은 국립대학교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총장 선임 주체를 이사회에서 총장선임추천위원회로 변경하고 있는데, 총장선임 추천위원회는 총장 선정 후 해산되는 일회성 기구이고, KAIST는 국립대학교처럼 대통령이 최종 임명권을 행사하는 구조가 아닌 이사회

가 총장에 대한 선임 및 해임에 대한 최종 책임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최종 선임권자의 지위가 다소 불명확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제도 설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이사회의 선임권 삭제는 현행 이사회가 임원(총장을 포함한 이사 등)의 선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도록 한 제6조 및 제8조⁹⁾와 충돌할 소지가 있으므로, 총장의 최종 선임권에 대한 논의를 거친 후 관련 조항을 함께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셋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도 모두 KAIST와 유사한 총장 선임절차를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KAIST만 총장 선임방식을 별도로 변경할 경우 같은 과학기술원 체계 내에서 기관별 총장 선임구조가 달라지게 되므로 제도적 정합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특히 구성원 참여 확대의 필요성은 KAIST만의 문제가 아니라 4대 과학기술원 공통의 과제인 만큼,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KAIST에 한정하는 것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진 기관들 간 총장 선임방식

9) 「한국과학기술원법」 제8조(이사회) ① 과학기술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2.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의 불일치를 초래하므로 4대 과기원 전체를 아우르는 거버넌스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 기준,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반영한 하위 법령 및 내부규정 정비 등 다수의 후속준비가 필요하므로, 충분한 준비기간을 두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특히 개정된 총장 선임절차를 현 총장 선임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므로¹⁰⁾, 제도 시행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충분히 거쳐 다음 총장 선임부터 개정된 절차가 안정적이고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마지막으로, 현행법이 대학의 자율성을 위해 기관 운영의 주요 내부 사항을 폭넓게 정관에 위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추천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적 내용 역시 시행령이 아닌 정관을 통해 규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229

10) 현재 KAIST는 총장선임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며 4.10.까지 총장 후보 발굴을 위한 공모절차를 실시할 예정임.

참고

KAIST 및 주요 국립대학 총장 선임 절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6.3.

□ KAIST 총장 선임 절차

일정	주요 내용
총장 선임 계획	KAIST 이사회에서 총장 선임 계획 의결
총장후보 발굴위원회	발굴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근거) KAIST 총장후보발굴위원회 운영규정 공개 초빙 공고 - 홈페이지, 국내·외 일간지 등 30일 게재
총장후보 선임위원회	서류 심사(1단계) → 면접 심사(2단계) → 이사회에 3인 이내 추천 ※ (근거) KAIST 총장후보선임위원회 운영규정
인사검증	기관장으로서의 청렴도 등 검증
이사회	총장 선임 안건 표결 → 교육부 장관 동의 → 과기정통부 장관 승인

□ 주요 국립대 선임 절차(예시) ※근거 법령 :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 [개요]	50인이상 교원의 추천을 받은 10년이상 재직교원이 후보자로등록 → 선거 실시
▶ [절차]	선거준비(추천위구성등)약2개월 → 선거 약 3~5개월 → 검증·임명 약1개월소요

	단계	세부 내용	시점(소요기간)
준비	총장임용후보자 선정관리위원회 구성	- 총장 선정을 위한 행정 및 선거관리 지원 사무국 구성 - 추천위 구성, 공모 일정, 검증 절차 등 일정 논의	통상 임기만료 前 210일까지 (약 1개월)
	총장임용후보자 추천위원회 구성	- 교원, 직원, 학생, 외부인사 등 50명 내외 ※ 외부인사는 1/10 이상, 여성 비율은 2/10 이상	임기만료 前 210일까지 (약 1개월)
선거	선관위 위탁	▶ 소재지 관할 구·시·군 선관위에 선거사무 위탁(의무사항)	임기만료 前 180일까지
	선거 공고/실시	▶ 선관위와 협의하여 후보자* 등록일 및 선거일 공고 * 본교 재직 10년 이상 & 50인 이상의 교원 추천 등 ▶ 후보자 모집 후, 일정 선거운동(토론회 등) 기간 설정	(약 3~5개월)
	총장임용후보자 2인 추천	▶ 순위를 명기하여 2인 이상 추천 ※ 1순위 후보자 부적격시 2순위 후보자 임용수용여부 의사 표기	임기만료 前 30일까지
임명	교육부 장관 제청	▶ 인사검증 및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교육공무원법 제3조) 심사	(약 1개월)
	대통령 임명	▶ 국무회의 의결 → 대통령 임명	